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74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이만희 · 이성권 · 서천호

김기웅 · 권영진 · 김상훈

엄태영 · 이소희 · 이종배

이달희 · 최보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법률 제 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비전염성결핵환자”를 “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로, “결핵환자라는”을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생 략)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u>비전</u> <u>염성결핵환자</u> 에 대하여 <u>결핵환</u> <u>자</u> 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 부할 수 없다.	④ ----- <u>비전</u> <u>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u> <u>자</u> ----- <u>결핵환자 또는 잠복</u> <u>결핵감염자</u> 라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